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9,056,612	29,371,698
일반회계	897,185,285	26,915,559
특별회계	81,871,327	2,456,140
공기업특별회계	35,055,513	1,051,66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055,513	1,051,665
기타특별회계	46,815,814	1,404,4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43,317	28,300
자활기금특별회계	533,269	15,99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221,000	96,6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3,381	6,401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53	29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845,610	55,368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7,576	5,927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736,115	22,083
수질개선특별회계	39,124,593	1,173,7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955,953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